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①~③ (생략) ④ 사후관리물품이 수입신고된 때에 통관지 세관장은 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내역이 적정한지를 우선 심사하고,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별표2의 사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심사·결재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이미 제출받은 수입신고서류상 세관기재란에 별표 3의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 또는 날인하여 수입자가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이 경우 통관지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수입자가 해당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1. <u>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별표3의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기</u>	○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이 자동으로 생성·출력됨에 따라 규정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⑤ (생략) <신설>	<u>재하고 날인</u> <u>2. 별표 3-1 또는 별표 3-2의 사후관리</u> <u>의무사항 안내문을 첨부</u>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각 호의 물품 이외에 세율이 낮은 용도뿐만 아니라 세율이 높은 용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목번호 결정과는 별개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 용도세율 관련 소송(대법원 2020두30344호, 2020두30351호)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을 명확화
제16조(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1.~ 3. (생략) <신설>	제16조(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항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에 대한 종결신청 절차 간소화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⑤ (생략)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한 사후관리 종결신청 ③~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 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모사전 송(Fax) 또는 인터넷 <u>통관포탈</u>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 ② (생략)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 ----- ----- ----- <u>통관포탈</u> (unipass.customs.go.kr)을 ----- ----- ② (현행과 같음)	○ 용어 정비
제22조(현지확인) ① (생략) <신설>	제22조(현지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u>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 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 7일전까지 해당 사후관리업체 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사후관리 현</u>	○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제 지침(세원심사과 -1410호, 2014.4.24.)을 고시에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② (생략)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할 때에는 설치(사용)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사후관리 확인일시와 확인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장확인 계획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u> <u>다만,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u> ③ (제2항이 제3항으로 번호 변경) ④ ----- 제3항에 ----- ----- ----- ----- ----- ----- -----	
제24조(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제24조(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① 「<u>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u>」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u>종합인증우수업체</u>는 자율사후관	① 「<u>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u>」에 ----- ----- <u>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u>는 --	○ 고시 명칭 개정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리업체가 된다. 다만, 세관장은 업체의 취소요청이 있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자율사후관리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적정성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할 때 확인한다. ⑥~⑦ (생략)	----- ----- ----- -----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 ⑥~⑦ (현행과 같음)	○ 고시 명칭 개정사항 반영
제25조(사후관리물품의 위탁 및 취소) ① 영 제1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은 별표 6과 같다. ②~③ (생략)	제25조(사후관리물품의 위탁 및 취소) ① 법 제108조제3항 및 영 ----- ----- ----- ②~③ (현행과 같음)	○ 법 제108조 개정내용(사후관리 재위탁근거 마련)에 따른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제31조(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수입화주	제31조(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	○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 ----- -----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처분 등)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략)	제35조(과태료 처분 등) ① ----- ----- ----- -----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 ----- 1.~4. (현행과 같음)	○ 훈령 명칭 개정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준용규정) ① (생략) ②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 -----	○ 훈령 명칭 개정사항 반영
	부 칙<관세청고시 제00호(20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별표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삭제≤	○ 밋데리충전기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추가(‘별표1의 나’에서 ‘별표1의 가’로 이동)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32	E1, CIT	8504.40-3010	밋 데 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3	FCN	8504.40-3010	밋 데 리 충전기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별표2) 사후관리물품 용도의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별표2) 사후관리물품 용도의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 감면대상 물품 추가*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일련 번호	품명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고	일련 번호	품명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고	* 관세법 제93조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제22호(보세공장 반입 시설재)	
6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6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u>다. 제18호 해당물품</u>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u>수입신고수리일</u>			
7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나. 제3호 해당물품 <삭 제>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1년 6개월		7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나. 제3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1년 6개월			
8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분할납부 최종납부일		8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분할납부 최종납부일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및 제21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어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u>및 제22호</u>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어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3년 3년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3년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3년 3년 3년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3년 3년 3년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	3년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	3년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	3년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	3년			
14	가.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나.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14	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2.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자유무역예정지역 반입사실 확인일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자유무역예정지역 반입사실 확인일			
16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의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등	3년		16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의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등	3년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3)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제8조제4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세관기재란</th></tr><tr><td>용도세를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td><td>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수출·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관세청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td></tr><tr><td>재수출 면세·감면 물품</td><td>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 【YYYY.MM.DD】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td></tr></table>	구분	세관기재란	용도세를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수출·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관세청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재수출 면세·감면 물품	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 【YYYY.MM.DD】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별표 3)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제8조제4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세관기재란</th></tr><tr><td>용도세를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td><td>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가세한 내용은 불입 안내문 참조. 관세청 통관포털(unibass.customs.go.kr)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td></tr><tr><td>재수출 면세·감면 물품</td><td>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 【YYYY.MM.DD】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가세한 내용은 불입 안내문 참조</td></tr></table>	구분	세관기재란	용도세를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가세한 내용은 불입 안내문 참조 . 관세청 통관포털(unibass.customs.go.kr)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재수출 면세·감면 물품	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 【YYYY.MM.DD】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가세한 내용은 불입 안내문 참조	3-1, 3-2) 추가에 따라 별표3 문구 수정
구분	세관기재란													
용도세를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수출·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관세청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재수출 면세·감면 물품	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 【YYYY.MM.DD】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구분	세관기재란													
용도세를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가세한 내용은 불입 안내문 참조 . 관세청 통관포털(unibass.customs.go.kr)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재수출 면세·감면 물품	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 【YYYY.MM.DD】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가세한 내용은 불입 안내문 참조													
<신설>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별표 3-1, 3-2)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3-1)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용도세울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제8조제4항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 용도세울적용 또는 관세감면·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의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서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밀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나.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 준수 의무사항 및 처벌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준수 의무사항</th><th colspan="2">준수사항 위반시 추정 및 처벌</th></tr> <tr> <th></th><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 -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 설치(사용) 장소에 1개월내 반입의무 - 통관표지 부착의무 </td><td>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3항)</td><td>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td></tr> <tr> <td>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 용도의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일시반출(기한연장)시 신고 의무 </td><td>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4항)</td><td>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등</td></tr> <tr> <td> - 멸실사실 신고 의무 - 폐기, 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td><td>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4항)</td><td>각별 수입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td></tr> <tr> <td> -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주식양도시 감면세액의 납부의무 </td><td>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5항)</td><td>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td></tr> </tbody> </table>	준수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시 추정 및 처벌			구분	내용	-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 설치(사용) 장소에 1개월내 반입의무 - 통관표지 부착의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 용도의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일시반출(기한연장)시 신고 의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등	- 멸실사실 신고 의무 - 폐기, 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4항)	각별 수입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	-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주식양도시 감면세액의 납부의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준수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시 추정 및 처벌																			
	구분	내용																		
-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 설치(사용) 장소에 1개월내 반입의무 - 통관표지 부착의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 용도의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일시반출(기한연장)시 신고 의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등																		
- 멸실사실 신고 의무 - 폐기, 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4항)	각별 수입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																		
-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주식양도시 감면세액의 납부의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신 설>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3-2)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재수출 면세·감면 물품, 제8조제4항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재수출예정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재수출 감면물품은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의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도의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중에 감면 받은 당해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폐기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멸실사실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멸실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하고 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재수출이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3-1, 3-2) 추가
		○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시 사후관리세관을 기재하도록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항목 추가																																																					
<table><tr><td>담당부서</td><td></td><td rowspan="4">용도세울 전용물품 확인신청(확인)서</td><td>처리기간</td></tr><tr><td>담당과장</td><td></td><td rowspan="3">14 일</td></tr><tr><td>담당자</td><td></td></tr><tr><td>연락처</td><td></td></tr><tr><td>수입자</td><td>상호 대표자 주소</td><td>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td><td></td></tr><tr><td rowspan="4">물품명세</td><td>HS번호</td><td>사업의종류</td><td></td></tr><tr><td>품명</td><td></td><td></td></tr><tr><td>모델·규격·상표명</td><td></td><td></td></tr><tr><td>성분·등급</td><td></td><td></td></tr><tr><td></td><td>전용용도</td><td></td><td></td></tr><tr><td>전용물품이유</td><td colspan="3"></td></tr><tr><td>※전용물품 확인시 유의사항</td><td colspan="3"></td></tr><tr><td>「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니 확인(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세관장 귀하 </td><td>「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년월일 OO세관장 직인 귀하 </td><td></td></tr><tr><td>*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4.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또는 견본품)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td><td>수수료 없음 </td><td></td><td></td></tr><tr><td>※ 유의사항 :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동안은 상기 물품을 전용확인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물품확인·용도세울적용 신청 없이도 용도세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td><td colspan="3">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td></tr><tr><td><신설></td><td></td><td></td></tr></table>	담당부서			용도세울 전용물품 확인신청(확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14 일	담당자		연락처		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물품명세	HS번호	사업의종류		품명			모델·규격·상표명			성분·등급				전용용도			전용물품이유				※전용물품 확인시 유의사항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니 확인(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세관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년월일 OO세관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4.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또는 견본품)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동안은 상기 물품을 전용확인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물품확인·용도세울적용 신청 없이도 용도세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설>		
담당부서			용도세울 전용물품 확인신청(확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14 일																																																					
담당자																																																							
연락처																																																							
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물품명세	HS번호	사업의종류																																																					
	품명																																																						
	모델·규격·상표명																																																						
	성분·등급																																																						
	전용용도																																																						
전용물품이유																																																							
※전용물품 확인시 유의사항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니 확인(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세관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년월일 OO세관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4.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또는 견본품)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동안은 상기 물품을 전용확인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물품확인·용도세울적용 신청 없이도 용도세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설>																																																							

담당부서		용도세울 전용물품 확인신청(확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14 일
담당자			
연락처			
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물품명세	HS번호	사업의종류	
	품명		
	모델·규격·상표명		
	성분·등급		
	전용용도		
전용물품이유			
사후관리세관			
※전용물품 확인시 유의사항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니 확인(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세관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년월일 OO세관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4.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또는 견본품)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①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동안은 상기 물품을 전용확인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물품확인·용도세울적용 신청 없이도 용도세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후관리세관에는 해당 물품을 사후관리하는 모든 세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지 제11호의2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계획통지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10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2조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22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3. 귀 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물품 중 아래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사에서 아래 방문일자에 현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문일자를 선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현지확인 방문일자 : 0000. 00. 00 나.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요청 물품 명세(예) <table><tr><th>면면</th><th>사후관리 번호</th><th>수입신고 번호(관)</th><th>수량</th><th>HS번호</th><th>품명</th><th>규격</th><th>수량</th><th>과세가격 (천원)</th><th>관면종 무효</th><th>사후관리 기간</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다.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사항 <table><tr><th>구분</th><th>확인 사항</th></tr><tr><td rowspan="8">공통</td><td>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td></tr><tr><td>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원문과 일치 여부</td></tr><tr><td>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와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td></tr><tr><td>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td></tr><tr><td>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td></tr><tr><td>멸실, 멸인, 합성·훼손,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td></tr><tr><td>사후관리대상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td></tr><tr><td>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td></tr><tr><td>기타, 기타 등</td><td>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무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td></tr><tr><td>원재료,부품품등</td><td>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통관표지 무효 여부(통관표지무효대상물품에 한함)</td></tr><tr><td></td><td>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td></tr></table>	면면	사후관리 번호	수입신고 번호(관)	수량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천원)	관면종 무효	사후관리 기간	비고													구분	확인 사항	공통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원문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와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멸인, 합성·훼손,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상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기타, 기타 등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무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원재료,부품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통관표지 무효 여부(통관표지무효대상물품에 한함)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 예고 실시에 따른 서식 신설
면면	사후관리 번호	수입신고 번호(관)	수량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천원)	관면종 무효	사후관리 기간	비고																																
구분	확인 사항																																										
공통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원문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와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멸인, 합성·훼손,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상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기타, 기타 등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무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원재료,부품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통관표지 무효 여부(통관표지무효대상물품에 한함)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